

第27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8年2月19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5.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6.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4.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15.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租稅犯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25. 課稅資料의 제출및 관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6.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7. 官用物品에 대한滯納租稅에 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29.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
30.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지진재해대책법안
3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47.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4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전시산업발전법안
5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건강검진기본법안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7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7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76.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환경보건법안(대안)
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9.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0.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 따라 一般會計가承繼한財産의處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9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首都圈整備計劃法 전부개정법률안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98.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100.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101.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10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4.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1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附議된案件

- | | | |
|-----|---|---|
| ○ | 의사진행의 건 | 7 |
| 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8 |
| 2.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
| 3.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 · 김기춘 · 김학송 · 홍문표 · 이규택 · 이강두 · 김양수 · 정희수 · 김영덕 · 김정권 · 최경환 · 정갑윤 · 김성조 · 안홍준 · 김태환 · 정병국 · 정문헌 의원 발의) | 8 |
| 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5.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9 |
| 6. | 公益法人의設立 · 運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7.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8.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9. | 住宅貸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1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11.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 12.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

13.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4.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5.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 · 우제창 · 이강두 · 김정훈 · 최경환 · 박재완 · 정두언 · 주호영 · 홍문표 · 정세균 의원 발의)	12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2
1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명주 · 김석준 · 김양수 · 김재경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의원 발의)	12
1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2
1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2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2
21.	금융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2
22.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영세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3
2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김영주 · 김춘진 · 민병두 · 우윤근 · 이계안 · 이미경 · 이영호 · 정의용 · 최재천 · 김명자 의원 발의)	13
24.	租稅犯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 · 송영길 · 박영선 · 장영달 · 이기우 · 이계안 · 강봉균 · 우제창 · 양승조 · 최용규 · 심재덕 의원 발의)	13
25.	課稅資料의 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6.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7.	官用物品에대한滯納租稅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3
2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5
29.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 김정권 · 김학송 · 김재원 · 신상진 · 엄호성 · 이계경 · 김송자 · 안택수 · 황진하 의원 발의)	15
30.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정부 제출)	15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정장선 · 고조흥 · 최재성 · 정병국 · 최용규 · 안민석 · 이기우 · 정진섭 · 이계진 · 문희상 · 강창일 · 박상돈 · 박기춘 · 문병호 · 김재윤 · 문학진 · 강성중 의원 발의)	17
3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
33.	지진재해대책법안(정부 제출)	17
3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18
3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18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4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선병렬 · 정봉주 · 노현송 · 노웅래 · 이경숙 · 이목희 · 이은영 · 최재성 · 김태년 · 이인영 의원 발의)	19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정장선 · 강창일 · 신상진 · 민병	

- 두 · 정봉주 · 이경숙 · 이은영 · 강길부 · 안민석 · 최재성 · 정의용 · 한병도 · 염동연 · 장복심 · 우윤근 · 유필우 · 김명자 · 문학진 · 이원영 · 김부겸 · 박상돈 · 이기우 · 유기홍 의원 발의) 19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 이은영 · 김영주 · 최순영 · 김효석 · 안민석 · 최규성 · 정봉주 · 이미경 · 민병두 · 유기홍 · 이인영 · 홍미영 · 김현미 · 김교홍 · 이상경 의원 발의) 19
4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0
4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46.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47.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4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49.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5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 김양수 · 김정권 · 엄호성 · 이경제 · 신상진 · 김명주 · 이성구 · 이명규 · 남경필 · 정종복 · 권영세 · 김재원 · 정두언 · 안명옥 · 김학송 · 이해봉 의원 발의) 23
52.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김태년 · 김형주 · 이상호 · 김춘진 · 강봉균 · 박찬석 · 최철국 · 우원식 · 박기춘 · 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김용갑 · 한광원 · 양승조 · 강기정 · 김종률 · 김낙성 · 안영근 · 김선미 · 이주호 · 변재일 · 이규택 · 김현미 · 선병렬 · 문병호 · 정청래 · 박명광 · 김혁규 · 정봉주 · 김원기 · 이시종 · 조정식 · 이상열 · 김덕규 · 서갑원 의원 발의) 23
5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23
5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교홍 · 이상열 · 김덕규 · 이병석 · 조정식 · 권선택 · 서갑원 · 김낙순 · 박상돈 ·곽성문 · 손봉숙 · 이광철 · 박찬석 · 배일도 · 변재일 · 김태홍 · 신명 · 이시종 · 한병도 · 이성권 · 박순자 · 노영민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23
5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주승용 · 노영민 · 곽성문 · 우체향 · 변재일 · 배일도 · 조정식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23
5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 · 김정권 · 신상진 · 박재완 · 박찬숙 · 윤건영 · 고조홍 · 이인기 · 김성곤 · 고희선 · 권선택 · 최철국 · 김명자 · 이성권 의원 발의) 23
5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60.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6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62.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김영주 · 정청래 · 이광철 · 박상돈 · 김종률 · 유재건 · 김선미 · 김동철 · 강창일 · 이기우 의원 발의) 25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고경화 · 신상진 · 김태년 · 안명옥 · 안상수 · 이해봉 · 정성호 · 정문현 · 이인기 · 장복심 · 박찬숙 의원 발의) 25
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송영길 · 김현미 · 장복심 · 유기홍 · 이상호 · 이광철 · 이화영 · 양승조 · 강기정 · 안민석 · 윤호중 · 김선미 · 장향숙 · 한병도 · 유승희 · 홍미영 · 오영식 · 이기우 · 김영춘 · 이경숙 · 노현송 · 이계경 · 이은영 의원 발

의)	25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 · 이재창 · 김기춘 · 안택수 · 이상득 · 주호영 · 황진하 · 이방호 · 송영선 · 김충환 · 한선교 · 김재원 · 정성호 · 정병국 · 박찬숙 · 박세환 · 최병국 · 이상배 · 박재완 · 이해훈 · 김석준 · 박승환 · 김성조 · 윤두환 · 김명주 · 서병수 · 신상진 · 이인기 · 남경필 · 권철현 · 김동철 의원 발의)	27
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고희선 · 권경석 · 김양수 · 단병호 · 맹형규 · 신명 · 신상진 · 이상배 · 정갑윤 · 조성래 · 최구식 의원 발의)	28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6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우제창 · 채수찬 · 이계안 · 조정식 · 김종률 · 최규성 · 배일도 · 장복심 · 김태홍 · 이시중 · 김혁규 · 심재엽 · 최인기 · 김형주 · 제종길 · 박승환 의원 발의)	28
7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7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8
72.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7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7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75.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76.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77. 환경보건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신중식 · 주승용 · 노영민 · 우원식 · 장복심 · 김홍업 · 문병호 · 이종걸 · 천정배 · 박영선 · 최재천 · 최규성 · 정성호 · 강창일 · 이영호 · 김덕규 · 양형일 · 채일병 의원 발의)	30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1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 · 김정권 · 이인기 · 고조홍 · 박재완 · 심대평 · 공성진 · 박계동 · 김석준 · 김기현 의원 발의)	31
8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3.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1
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3
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3
87.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3
88.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3
89.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3
90.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 따라 一般會計가承繼한財産의 處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 정갑윤 · 최병국 · 김재윤 · 곽성문 · 이해봉 · 이인기 · 신상진 · 안상수 · 문희 의원 발의)	34
9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김동철 · 노회찬 · 단병호 · 문석호 · 박상돈 · 심상정 · 임종인 · 정성호 · 조배숙 · 주승용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34
9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길부 · 강창일 · 김부겸 · 김선미 · 문학진 · 유필우 · 이영순 · 이인영 · 주승용 · 한병도 의원 발의)	34
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이성권 · 한선교 · 신상진 ·	

	김태환·김영숙·박계동·정진섭·정갑윤·이명규·김정권·고경화 의원 발의) …… 35
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변재일·주승용·노영민·김낙성·박찬석·신중식·김종률·홍재형·이광재·서재관 의원 발의) … 35
95.	首都圈整備計劃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98.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100.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101.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7
10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신상진·이성권·유승민·이계경·황우여·고조흥·문희·안상수·배일도 의원 발의) … 38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8
1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39
103.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장 제출) …… 39
104.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9
o	5분자유발언 …… 40

(14시36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14시38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재의 표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의사일

정에서 1호 안건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국회는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년여 논란 끝에 단 반대 1인, 기권 6인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돌이켜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두 번의 중단 위기와 26만 가구의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쫓겨나고, 또 우리 본회의장 앞에서까지 그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례적인 이력을 안고 태어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가히 성실납세자의 승리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조세정의 실현의 염원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갖게 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재력과 병력, 신뢰 중에서 국가가 마지막까지 고수할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의 표결에 부쳐진 학교용지 환급 특별법안이 바로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건을 양당 협의를 통해서 안건 상정해 놓고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또 약속을 파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납세자단체와 피해자모임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 밑에 1층에 있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이것이 상정돼서 우리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직전에 안건을 파기한 한나라당의 행태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장경수 의원이, 또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속 파기한 부분을 문제 삼고, 그래서 1월에 통과된 부분을 했는데 오늘의 안건상정 약속 파기는 정말로 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새 집권당의 횡포가 해도 정말 너무하고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도 상도의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신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자의 말씀에도 그렇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에는 그보다도 더 높은 도의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 오늘 보인 태도는 동네 골목시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 이 안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해서 올린다면 그런 문제, 그런 의식은,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겠지요.

이제 한나라당은 소위 예측할 수 없는 당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락가락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확실한 태도로 이 안건을 오늘 중이라도 상정해서 재의결 통과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이를 찬성하기로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나라당의 상식과 도의에 맞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

서, 만약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면서 반대하시든지 아니면 찬성을 한다면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합시다. 비겁하게 뒤에서 안건상정을 막판에 막고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훼방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 국회를…… 오늘의 본회의가 지나면 26일 본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6일 본회의를 잘못 넘긴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태도로 우리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날 표결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면, 또 오늘 같은 태도가 일어난다면,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모두 다, 한나라당이건 우리당이건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안건이 1호 상정으로 됐던 것이 불과 100호 안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임채정 자, 장내 진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국회의 관례상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금방 홍미영 의원이 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함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박희태·김기춘·김학송·홍문표·이규택·이강두·김양수·정희수·김영덕·김정권·최경환·정갑윤·김성조·안홍

준·김태환·정병국·정문헌 의원 발의)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제출)
6.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住宅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6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선병렬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자료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귀화허가 등의 취소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규정 중 그 시행일이 도과한 것이 있어 부칙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복지증진 책무 부여, 국가의 법률구조비용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설치 명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및 공단의 지부 등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고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현행법과 같이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경우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신뢰

항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들은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3항의 공익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벌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6조의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인 법무사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둘째, 안 부칙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규정된 것은 이미 그 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부칙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규정된 것은 이미 그 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등의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상득 선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임태희 · 우제창 · 이장두 · 김정훈 · 최경환 · 박재완 · 정두언 · 주호영 · 홍문표 · 정세균 의원 발의)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명주 · 김석준 · 김양수 · 김재경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의원 발의)

18.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1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22.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 발의)(이성권·권영세·권철현·김석준·김재경·김정훈·박형준·이계경·이명규·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23.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박영선·김영주·김춘진·민병두·우윤근·이계안·이미경·이영호·정의용·최재천·김명자 의원 발의)
24. **租稅犯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 발의)(문석호·송영길·박영선·장영달·이기우·이계안·강봉균·우제창·양승조·최용규·심재덕 의원 발의)
25.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官用物品에대한滯納租稅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5시09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5항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관용물품에대한채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오제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청주 흥덕갑 출신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물거래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 관련 불공정행위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일반상품선물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신학용 의원, 박영선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 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이 법 시행 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 요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자격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가 우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때에는 국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제도,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근로장려세제 관련 허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의대여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차원에서 자구정리를 하는 내용이고,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관업무 관세서류에 관세

사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관세사 시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관용물품에 대한 체납조세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입법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사문화된 법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용물품에대한채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관용물품에대한채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9.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정권·김학송·김재원·신상진·엄호성·이계경·김송자·안택수·황진하 의원 발의)

30.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정부 제출)

(15시26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8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명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6·25 전사자유해 발굴과 국립묘지 안장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둘째,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벌칙조항은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벌금형과 자유형 중에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행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이 자유형, 즉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비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서 벌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형벌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당초 법률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벌금 현실화만을 규정했지만 벌금액의 현실화에 의한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현행 벌금규정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끝으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전투근무 지원, 교육·훈련 등 비전투 분야의 군부대 및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방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군 책임운영기관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집행적 성격을 띠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하고,

셋째,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채용하되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채용토록 하고,

넷째, 사업성과 평가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하에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두고 기관의 지정·해제 등의 심의를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1999년에 제정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원용토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정장선·고조흥·최재성·정병국·최용규·안민석·이기우·정진섭·이계진·문화상·강창일·박상돈·박기춘·문병호·김재윤·문학진·강성중 의원 발의)

3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3. 지진재해대책법안(정부 제출)

(15시36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1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지진재해대책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성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양주·동두천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근거규정을 설치하고 그 기간은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제거 완료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의원, 허태열 의원, 최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재해대책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대응 등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 지역의 침수 범위를 예측한 침수 예상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득 부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6인, 기권 5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진재해대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3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15시4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원복**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원복 의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안명옥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법률안들을 통합하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권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역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신설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 한국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양형규정을 동일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선병렬·정봉주·노현송·노응래·이경숙·이목희·이은영·최재성·김태년·이인영 의원 발의)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정장선·강창일·신상진·민병두·정봉주·이경숙·이은영·강길부·안민석·최재성·정의용·한병도·염동연·장복심·우윤근·유필우·김명자·문학진·이원영·김부겸·박상돈·이기우·유기홍 의원 발의)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이은영·김영주·최순영·김효석·안민석·최규성·정봉주·이미경·민병두·유기홍·이인영·홍미영·김현미·김교홍·이상경 의원 발의)

4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민병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민병두 의원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철현 의원, 이재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민병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5시59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정청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국회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정청래 의원, 손봉숙 의원, 지병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성 여부 검토를 매10년 이내로 하도록 법정화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절차적 투명성 및 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요무형문화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인정·해제조건을 구체화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사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 동산문화재는 도난 위험성과 소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상황 등을 문화재청장이 파악·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숭례문 화재 대참사의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100%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4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홍문표**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예산·홍성 출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최규성 의원님, 강기갑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현행 목표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목표가격의 변경 단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그 해결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입장이 쌀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라는 동 법안의 당초의 입법취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표가격의 적용 대상 기간을 2008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로 연장하고 고정하여 목표가격의 변경 단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발의)

(16시16분)

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맹형규 · 김양수 · 김정권 · 엄호성 · 이경재 · 신상진 · 김명주 · 이성구 · 이명규 · 남경필 · 정종복 · 권영세 · 김재원 · 정두연 · 안명옥 · 김학송 · 이해봉 의원 발의)

52.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김교홍 · 김태년 · 김형주 · 이상호 · 김춘진 · 강봉균 · 박찬석 · 최철국 · 우원식 · 박기춘 · 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김용갑 · 한광원 · 양승조 · 강기정 · 김종률 · 김낙성 · 안영근 · 김선미 · 이주호 · 변재일 · 이규택 · 김현미 · 선병렬 · 문병호 · 정청래 · 박명광 · 김혁규 · 정봉주 · 김원기 · 이시중 · 조정식 · 이상열 · 김덕규 · 서갑원 의원 발의)

5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5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김태년 · 김교홍 · 이상열 · 김덕규 · 이병석 · 조정식 · 권선택 · 서갑원 · 김낙순 · 박상돈 ·곽성문 · 손봉숙 · 이광철 · 박찬석 · 배일도 · 변재일 · 김태홍 · 신명 · 이시중 · 한병도 · 이성권 · 박순자 · 노영민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5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최철국 · 주승용 · 노영민 · 곽성문 · 우제항 · 변재일 · 배일도 · 조정식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5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이병석 · 김정권 · 신상진 · 박재완 · 박찬숙 · 윤건영 · 고조홍 · 이인기 · 김성곤 · 고희선 · 권선택 · 최철국 · 김명자 · 이성권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전시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53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이명규**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산업기술해외유출법에 대한 별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둘째,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신축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철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신고가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특허법인 설립인가

의 취소 요건 중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경우를 위반행위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을 열거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재량권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시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전시산업발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0.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2.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강기정·김영주·정청래·이광철·박상돈·김종률·유재건·김선미·김동철·강창일·이기우 의원 발의)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고경화·신상진·김태년·안명옥·안상수·이해봉·정성호·정문현·이인기·장복심·박찬숙 의원 발의)

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백원우·송영길·김현미·장복심·유기홍·우상호·이광철·이화영·양승조·강기정·안민석·윤호중·김선미·장향숙·한병도·유승희·홍미영·오영식·이기우·김영춘·이경숙·노현송·이계경·이은영 의원 발의)

(16시29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건강검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63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백원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백원우**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시흥시 백원우 의원입니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문희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안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의 감염정보 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대상자의 범위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과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성구 의원, 김춘진 의원, 안명옥 의원, 박찬숙 의원, 정형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른 입원을 할 때 동의를 하는 보호의무자의 숫자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 중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지역의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의 기본목표, 추진계획,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을 담은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희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속 공무원과 함께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직접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식품업소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건강저해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위생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어린이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

을 유발하는 식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영업자 중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백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검진기본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이재창·김기춘·안택수·이상득·주호영·황진하·이방호·송영선·김충환·한선교·김재원·정성호·정병국·박찬숙·박세환·최병국·이상배·박재완·이혜훈·김석준·박승환·김성조·윤두환·김명주·서병수·신상진·이인기·남경필·권철현·김동철 의원 발의)

(16시4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65항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화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면서 생산품 시설에 대하여는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셋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는 사업은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시설협회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과 국공유지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결과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원안을 받아들이면서 그중 시설협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법문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수행기관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정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은 보건복지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고희선·권경석·김양수·단병호·맹형규·신명·신상진·이상배·정갑윤·조성래·최구식 의원 발의)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9.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우제창·채수찬·이계안·조정식·김종률·최규성·배일도·장복심·김태홍·이시종·김혁규·심재엽·최인기·김형주·제종길·박승환 의원 발의)

7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시4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6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9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홍준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비 보조를 받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하여도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고, 폐차 및 수출 시에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며,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자원 순환의 개념 및 기본 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부품 등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하여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임인배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부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며, 공원사업으로 환지를 하는 경우 시행대상 범위를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로 한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습지조사 시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 여부를 규정하고, 습지조사 거부·방해에 대하여 현행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습지조사 시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 여부는 이미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샘물 개발 허가 취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샘물취수량으로 변경하며,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 간 부과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친

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공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보관리체계를 통한 구매실적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대해 보고·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임채정 안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환경보건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신중식·주승용·노영민·우원식·장복심·김홍업·문병호·이종걸·천정배·박영선·최재천·최규성·정성호·강창일·이영호·김덕규·양형일·채일병 의원 발의)

(16시5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2항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환경보건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제종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안은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건법안(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제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한국환경자원
 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건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환
 경보건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
- 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정
 권·이인기·고조홍·박재완·심대평·공성
 진·박계동·김석준·김기현 의원 발의)

- 8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
-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

(17시0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9항 근로기준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최
 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고령
 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고
 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진섭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정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입
 니다.

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자는 임신한 근
 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하였고 둘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폐기를
 제한하여 사용자가 재해보상청구권 시효기간 동
 안 보존하도록 하였고, 셋째 여러 사업체가 관련
 되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하
 서는 그 현장 단위로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
 출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습
 니다.

다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파견사업주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다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채용될 때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 차별을 금지하며, 둘째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구직급여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기준을 현재의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고용보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관련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정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찬성 163인, 기권 4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고

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7.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8.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89.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7시1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5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윤두환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전등급제도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고,

둘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 부실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잦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회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였고,

둘째, 건설업자 등이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 등은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대상지역에 발생하는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 용어 그리고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등의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끝내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0.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따라一般會計가承繼한財産의 處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정갑윤·최병국·김재운·곽성문·이해봉·이인기·신상진·안상수·문희 의원 발의)

9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강기갑·권영길·김동철·노회찬·단병호·문석호·박상돈·심상정·임종인·정성호·조배숙·주승용·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92. 건축물의분양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길부·

강창일·김부겸·김선미·문학진·유필우·이영순·이인영·주승용·한병도 의원 발의)

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이성권·한선교·신상진·김대환·김영숙·박계동·정진섭·정갑윤·이명규·김정권·고경화 의원 발의)

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변재일·주승용·노영민·김낙성·박찬석·신중식·김종률·홍재형·이광재·서재관 의원 발의)

95. 首都圈整備計画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8.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2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90항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제한재산의처분에 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주승용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남 여수시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제한재산의 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제한재산의 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법에 의한 무상양여업무 및 관계사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도록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시 종전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의 임대조건이 부과되는 대상자를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과열 방지를 위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거주자 우선분양과 전매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거주자 우선분양은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사하한금액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체계에 맞게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기업전용단지 제도 도입 및 이에 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의무확보비율을 최소 100분의 25로 하고 사권이 설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매입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일괄 제출한 63개 법안 중 일부로서 법률 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 법안들이 제출된 이후에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주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 따라 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 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 따라 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 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시3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01항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장향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

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다섯째,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장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용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속·차별·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3년마다 국내외의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성매매 예방 교육의 실시 주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며,

셋째, 해외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성매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안명옥·신상진·이성권·유승민·이계경·황우여·고조흥·문희·안상수·배일도 의원 발의)

(17시39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0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家族委員長 文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희 의원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산업 구조 및 양태가 급변하고 있고, 성매매방지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시4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05항으로 추가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0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안명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병호 의원, 이석현 의원, 정형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형 구분을 폐지하며,

셋째,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1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넷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46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3.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장 제출)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다른 열여섯 군데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26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미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채택하지 못한 정보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04.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47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04항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황진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창원에 소재한 39보병사단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39사단 이전 문제는 대부분 39사단과 창원시, 그리고 함안군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공용화기사격장 확보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이전의 필요충분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상 불필요한 논쟁

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군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청원 요구사항인 조속한 부대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9사단과 창원시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국사공용화기사격장 확보 문제는 이전사업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여 이전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부에서는 국사공용화기사격장 확보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창원시는 기존에 합의된 부대시설 보강을 위한 100억 원 상당의 추가지원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황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7시5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협상을 무시하고 결렬을 선언하고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

합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회를 짓밟고 국민의 바람을 무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국보위를 연상시켰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전두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없이 몇 사람이 인수위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장관 없는 새 정부를 만들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미 98년에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 후 열흘쯤 지나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에 이들이 지나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일은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87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과연 헌법을 위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염려해서 조각명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뭘……)

차명진 의원, 또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방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가 무서워서 지금 아부하려고 그래요?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잘하세요. 똑바로 좀 하라고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아.

(「발언을 들어. 발언을 들어.」 하는 의원 있음)

(○차명진 의원 의석에서 — 가만있는 사람을 왜 그래?)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이 53.4%밖에 안 됩니다. 지난 정부가 이때쯤, 정부 출범 전에 국민지지 84%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인수위가 잘한다고 하는 국민은 47.6%에 불과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을 무시 위할 줄 알고 국회를 인정하고 헌법을 지키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지병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발해야 될 새 정부가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지병문 의원께서 인수위원회 몇 분이 줄속으로 정부조직법을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은 지난 5년 동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표로 한나라당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약으로 국민을 통해 심판을 받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예비 야당인 통합신당은 새 정부 조직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을 때에 단행됐던

정부조직 개편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흔쾌히 찬성해 주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한다면 작금의 통합민주당의 행위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심판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부디 대선 대패의 쓰라림은 뒤로 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통큰 정치적 도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이제는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꾸리듯이 정부도 이제는 작고 효율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합니다. 예비 야당은 이념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했던 지난 실정에서 이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새 정부가 큰 살림을 마다하고 작은 살림살이로 알뜰하게 출발하겠다는데 거기에 혼수가 부족하다느니 지참금을 더 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 인권위에 대한 양보안을 냈고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다른 부처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은 특정 부처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고 똑같은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예비 야당의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했건마는 기어코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겼습니다.

만약 예비 야당이 특정 부처의 폐지를 반대하는 그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다수당이 그 힘을 추스르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예비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생명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헤아려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외국 사절에 야당의 반대로 조각조각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후진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요 시대의 추세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이 편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복된 여러 부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당정치가 무시되고 헌법과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명박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조각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해서 인수위 원안에 따른 국무위원과 장관 인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를 빌미로 승자독식, 무소불위, 일방통행의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기업을 넘어선 친

재벌정책, 대운하 조기 착공, 영어 몰입교육,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소환조사토록 하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권도 이처럼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기간에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서 큰 부처를 만들고 장관 몇 명 줄인다고 해서 작은 정부고 효율적인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 조직과 국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정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처럼 쉽게 전봇대 하나 뽑듯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일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에 반대합니다.

FTA 등 개방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건전성 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성장 산업인 금융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각자의 소신이 있을 것이고 당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토론과 다수결의 정치입니다. 의회주의 원칙을 지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은 앞에서는 협상을 지시해 놓고 뒤에서는 협상 결렬을 전제로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에 책임을 떠넘겨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구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
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
가 한창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선서하
면서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
시하고 국회와 야당을 들러리로 여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한 정치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을 것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상응한 심판을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채수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
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
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결렬
이란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파행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
다. 진심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원인이 통합민
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 야당에게는 국민도 국정도 없습니다. 오
로지 총선 전략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형적인 발
목 잡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적인 선택이었습니
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일 못하고 덩치만 큰 아
마추어 정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숭고하고 엄숙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민
심과 시대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도 매년 4900억 원의 절약을 약속
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
자는 것입니다.

그 후 국정의 파트너인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
의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관화 등 이미 많
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농
촌진흥청까지 양보할 의사를 비치기까지 했습니
다.

협상이 완료 단계에 왔다고 누구든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부의 존치 문제
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또 떡을 하나 달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노리는 호랑이가 연
상됩니다. 애당초 협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렬을 꿈꿔 왔던 것입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새 정부의 출범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
고 있습니다. 국민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선 전략용이라 해도 너무나 것이 아
닙니까?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출범조차 막는 것
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오만하고 무책임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휘말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
도 5일밖에 없습니다. 일정도 촉박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 정부조직법에 따라 13부 장
관을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국무위원을 내정
했던 것입니다. 장관 없이 법령 제안이나 각 부
처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국정 혼란과 공
백 사태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기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
는 것일 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정부의
조직은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이명박 정
부의 국정 철학을 존중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윤리에 기초
한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책임질 입
장도 아니면서 훼방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비 야당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박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께서……

○강기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오늘 들어서면서 국회 앞마당에서 준비 중인 이명박 정부 출범식장 준비 광경을 지켜보면서 부디 이명박 정부의 5년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운영되기를 빌면서 이 곳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잘되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기대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수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준비 과정을 보면서 “역시 이명박 당선인은 불도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싹이 노랗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인수위 과정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의 독선과 오만한 태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과 대운하를 밀어붙일 태세이고, 정부조직법이 여전히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단 발표라도 잘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광주·전남이 몹쓸 병 도는 동네도 아닐 거고 민주주의의 지키미, 그 광주·전남 아닌가요?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진대 이명박 정부의 처음 발표에 수석도, 장관도 광주·전남에 1명도 없는 걸 보면 이 정부의 시작은 분명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인이 할 일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4월 9일 총선에서 불도저식 정치를 하고 있거나 독단의 정부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애초에 내정되었다라고 발표된 어윤대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최종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어인 일인지 국민들은 무척 궁금해 합니다. 만약 그분이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의 문제로 최종명단에서 빠졌다면 그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이미 그보다 더한 탈세,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라고 광주 시민들은 저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합니다. 왜 그분은 갑자기 최종명단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기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식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 농촌, 농민과 국민건강과 관련된 검역주권에 관련된 발언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17일, 18일 연이어 한미 FTA 2월 국회 조기 비준을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우리 농·축산업을 파탄 낼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까지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이유가 전연 없고 그럴 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비준안을 처리해서 미국에 조공 바치듯이 바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준 빨리한다고 미국이 비준 안하는데 무슨 선점효과를 낸다는 말입니까?

미국 정치권과 정부는 한미 F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 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 미 목축업자 대표, 무역대표부 수석대표 다 이렇게 축하하러 온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광우병 관련 징후가 있는 소들을 전부 도축해서 학교 급식에 공급을 했다가 6만 5000t이나 지금 회수하고 있지 않

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분이 채 1주일을 남겨 놓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코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검역 문제이지 통상무역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주부의 75%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비료 값, 사료 값, 기름 값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은 앞으로 거꾸러지고 농촌은 초고령화로 생기를 잃어 가고 농업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농촌진흥청의 손발을 잘라 버리고 산림청을 이관시켜 버리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버리고 이것은 1차 산업인 농업을 무시하고 짓밟고 가겠다는 그릇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당에 이런 식량 위기를 대비해야 될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미 FTA, 광우병 관련된 미국 쇠고기, 해양수산부 폐지, 농촌진흥청 손발 자르는 그런 일, 산림청을 농민 품에서 뺏어가는 일, 즉각 철회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심은 천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우리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보다 더 현명하게 개안을 해 주십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업의 회

장이 아닌, CEO가 아닌 국가 경영의 주체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림과학원 아십니까?

농촌진흥청, 102년 된 기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십니까?

3개의 연구기관을 줄여서 7000명 공무원들 줄인다는데 무려 40%가 넘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이 1차산업의 연구기관, 그것도 100년이 넘으면서 농업관측과 산림관측과 어업관측, 해양관측을 하는 연구기관을 없앤다는 게 이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우리의 미래 부서를 모두 없애면서 과연 효율적인 정부를,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 설익은 뽕은 감을 주워 먹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무와 고구마를 캐 먹었던 뼈아픈 굶주림의 기억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돈 되지 않는 농업에, 저 깊은 산골의 산림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오대양 육대주 망망대해에서 삶과 바꾸고 있는 우리의 어업인들과 수산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조직을 만들면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효율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인 환경과 건설교통부를 합친 건설환경부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국·과 또는 과 단위로 축소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행정조직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조상과 부모와 가족들이 대대로 피땀 흘려 일군 농토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꾀꿍하게 지켜 왔던 이러한 농업연구기관과 농촌연구기관, 산림연구기관, 수산연구기관을 없애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까? 오대양 망망대해를, 저 남극의 세종기지를, 북극의 다산기지를 연구하고 행정중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미래의 첨단 부서를 없애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대부처, 통합부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갈갈이 찢깁니다. 환경부, 건설부, 농림부에 맡기겠다는 게 통합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현장 농업인과 가장 가까워서 호흡하며 농업의 중요성, 농업인의 아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러한 모든 부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라는 지식인포럼의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모임에서 올린 글을 하나 읽고 오늘 5분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예정된 수순대로 13개 부처를 뺀 나머지 부처들에 대하여 장관 임명을 하지 않고 조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당정치와 협상은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서럽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오묘한 것이어서 혹시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해양수산인들에게는 매우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양수산인을 대신하여 운명을 개척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폐지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와 비교할 때 오늘의 발표에서 보듯이 해양수산부 문제가 최후의 관건으로 부각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 관련 산업의—국회에서 국민들에게—중요성을 부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인들도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사태를 직시하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해수부 해체 반대투쟁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들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체는 미래가치를 사장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며 국가 미래전략과 무관한 기능주의의 무덤일 뿐이라는 우리들의 비판은 정당하고도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보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앞으로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 관한 일반의 낮은 인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체가 아니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의 현실을 그나마 이끌어낸 것도 바다의 무궁한 가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시인이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대한 바다에서는 조금의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바다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합시다.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존치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다의 미래가치, 민족의 운명이 걸린 바다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어버릴 수 없다는 우리들의 인식은 너무도 정당합니다.

전 세계가 바다의 통합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한반도 작은 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 미래전략과 바다의 통합관리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우리는 우리들의 바다세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푹푹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다 중심 사고를 포기하고 육지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역사의 퇴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힘찬 항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해수부 폐지 반대 앞으로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추후 우리들의 희망을 담아 바다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는 지식인 포럼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닻을 내리고 맑아 오는 수평선 쪽의 힘찬 미래를 함께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2월 18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차게 항로를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구호도 영원할 것입니다.

“바다로, 미래로, 세계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용희**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 통합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승례문이 불탔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승례문 화재 대참사, 문화재 참사의 관리책임자는 4명이었습니다. 유홍준 청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오세훈 현 서울시장 그리고

정동일 중구 구청장이었습니다.

3명은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독 단 한 사람만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커녕 국민성금을 모아서 승례문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심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려는 이마당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7대 악행에 대해서, 반민주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례문 대참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전시행정, 우익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러한 개방이었고 결국 승례문은 우익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합니다.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제87조 정부조직, 그리고 국무총리 제청권한을 망각하고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당정치를 훼손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 마치 불도저를 세워 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 말씀드립니다.

교육 대재앙입니다. 3불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남에 사는 학생, 그 학생들만 좋은 대학 가고 강북 마포에 있는 학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은 서울대 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족을 위한 영어 몰입교육으로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설익은 아마추어 불도저 운전수가 운행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환경 대재앙을 불러올, 그리고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부운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인수위원들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린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장어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장어 항응집대를 받았습니다. 부패 원조정당의 정권답습니다.

한승수 총리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와 특혜 증여세를, 증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밥 먹듯 했고 그리고 위장취업을 밥 먹듯 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총리지명답습니다.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승수 총리내정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니다.

이러한 이명박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아마추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국가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선에서 경쟁했던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소환하겠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죄지은 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더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도 소환하겠다고 검찰,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 대혈전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못난 송아지의 엉덩이에 난 뿔을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불도저 운전수가 대한민국 국토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양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당선자는 운동장 조깅을 돌다 갑자기 거꾸로 돌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가 그냥 써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대통령 취임 선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명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진 병 현 진 여 옥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천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황 우 여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명 심 재 덕 심 재 엽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엄 호 성 우 원 식 우 상 호 우 윤 식
 원 희 룡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서 해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신 국 환
 신 명 심 재 철 심 재 엽
 안 상 수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엄 호 성 오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정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주성영
 진수희 천영세 최규성 최연희
 허천우 여

기권 의원(1인)

황진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신학용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목희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3인)

신학용 심재덕 주호영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서해석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김명주	김무성	김부경	김석준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영선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목희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서해석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시민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3인)

김효석 이명규 정화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석준
김무성	김부경	김영덕	김영덕
김양수	김영대	김용갑	김용갑
김영숙	김영춘	김재원	김재원
김원웅	김재경	김종인	김종인
김정훈	김종률	김학송	김학송
김춘진	김태년	김희선	김희선
김홍업	김효석	맹형규	맹형규
남경필	노현송	박근혜	박근혜
문희상	민병두	박세환	박세환
박병석	박성범	박찬석	박찬석
박종근	박진	배일도	배일도
박형준	배기선	서재관	서재관
서갑원	서병수	신국환	신국환
선병렬	송영길	심재덕	심재덕
신상진	신학용	안명옥	안명옥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안택수
안영근	안상수	오영식	오영식
안영근	엄호성	우윤근	우윤근
우원식	우원식	유기준	유기준
원희룡	우제항	유시민	유시민
유승민	유선호	유필우	유필우
유정복	유정복	이강두	이강두
윤호중	윤호중	이계진	이계진
이계경	이계경	이명규	이명규
이낙연	이낙연	이상득	이상득
이상경	이상경	이승희	이승희
이성권	이성권	이원복	이원복
이영호	이영호	이인기	이인기
이은영	이은영	이재창	이재창
이재웅	이재웅	이혜훈	이혜훈
이재창	이재창	장경수	장경수
이해봉	이해봉	전여옥	전여옥
이혜훈	이혜훈	정두언	정두언
장경수	장경수	정세균	정세균
전병헌	전병헌	정진섭	정진섭
전여옥	전여옥	제종길	제종길
정문헌	정문헌	주승용	주승용
정의용	정의용	진영	진영
정청래	정청래	천정배	천정배
정형근	정형근	최성	최성
정희수	정희수	한선교	한선교
주성영	주성영	홍문표	홍문표
진수희	진수희		
천영세	천영세		
천병국	천병국		
최재천	최재천		
한광원	한광원		
현애자	현애자		
황진하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영주 김충환 박계동 장윤석
정화원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公益法人의設立 · 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남 경 필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안 상 수	안 영 근	안택 수	안 홍 준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우 제 향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최 재 천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황 우 여	황 진 하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천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조홍, 고권경, 길석익, 고희선, 공성진,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광성문, 권철현, 김광원, 권영길, 권오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권철휘, 김기현, 김낙성, 김교홍, 김기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김덕룡, 김동철, 김낙순, 김덕규,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명주,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성조, 홍준표, 황우여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기권 의원(5인)**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성곤, 배기선, 정두언, 정성호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황진하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희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의원 215인, 찬성 의원 210인임)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국환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김희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5인, 찬성 의원 210인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학용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종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봉주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임인배 정성호 차명진

○공약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화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 회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공 권 철 현 권 김 광 원 권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용
 정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제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천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종 룡 심 재 덕 정 성 호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장 기 정 장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고 회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용
 정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회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제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무성 안민석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고경화 정화원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춘진	김중환	김태년	김태환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희선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김학송	김형주	김홍엽	김희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광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차명진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최연희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홍창선	황우여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기권 의원(1인)

박 병 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택수	안 흥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 성 구 정 의 용

○종합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택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영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이재창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황우여	황진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기권 의원(1인)

유정복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2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덕규 안민석 한선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성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중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낙연
 이광철 이명규 이상득 이상배
 이미경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원영 이원복
 이윤성 이인제 이인기 이재창
 이혜훈 이진구 이종인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진섭 정희수 조성태
 조순형 진수희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한명숙 홍미영 황진하
 정병헌 정두언 정의용 정의화
 정세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영차명진 채수찬 최규성
 최경환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1인)

김동철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욱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준표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租稅犯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상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8인, 기권 의원 없음)

○課稅資料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남경필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박승환			
박형준			
서병수			
선병렬			
신기남			
심재엽			
안민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맹규상	문석호	문진동	문희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희규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황진하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희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3인)

고홍길 권경석 박형준

(이상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3인임)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官用物品에대한滯納租稅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송 영 길
유 필 우	유 윤 두	유 윤 호	유 이 강	서 송 영	서 신 국	선 신 기	송 신 명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업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이 명 규	이 목 회	이 상 경	이 상 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이 시 종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준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경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이 명 규	이 목 회	이 상 경	이 상 득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창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성 영	주 승 용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인	장 경 수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최 성	최 연 희	한 명 숙	한 선 교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기권 의원(1인)

홍 미 영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영선 최경환

기권 의원(1인)

박근혜

(이영순 의원 착오로 천영세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5인, 기권 의원 1인 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배기선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6인)
 강 창 일 김 재 윤 김 희 선 문 학 진
 박 기 춘 박 상 돈 유 선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광 철 이 영 순 이 인 영
 임 중 인 주 승 용 지 병 문 현 애 자
기권 의원(5인)
 김 영 선 김 형 주 손 봉 숙 이 목 희
 이 원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중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감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대 평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기권 의원(2인)
 박 상 돈 박 성 범
 (김춘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8인, 찬성 의원 186인임)

○지진재해대책법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숙 박 근 혜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대 평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문희상, 문병두, 박계동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택수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식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성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이낙연, 이목희, 이상경, 이영호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윤성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이은영, 이원복, 이원영, 이인제
 조성태,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진구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임인배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황진하,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정청래,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주승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은,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맹형규, 맹희상, 맹희준, 맹종근, 맹일도, 맹재관, 맹국환, 맹대평, 맹민석, 맹승조, 맹원식, 맹윤근, 맹인태, 맹두환, 맹경재, 맹계현, 맹상경, 맹영순, 맹원영, 맹인영, 맹주영, 맹인배, 맹복심, 맹갑윤, 맹성호, 맹진석, 맹화원, 맹성태, 맹지병문, 맹수찬, 맹규식, 맹연희, 맹현애자, 맹홍미영, 맹홍준표, 맹황우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강혜숙	강경화	강조홍	강길택
김진표	김춘진	김종환	김태년	강희선	강성진	강경석	강선택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강희영	강성오	강철현	김교홍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대평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원혜영	원회룡	유기준	유인태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진	박찬숙	배기선	서갑원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우제창	원혜영	원회룡	유기준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정두언	정봉주	정의용	정의화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이목희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반대 의원(1인)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김재원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기권 의원(3인)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재웅	정성호	정화원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김재원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용 이재창 이주영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향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봉주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갑윤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대평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기권 의원(1인)

이경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병렬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맹형규 노영호 문석호 문희석
 신명신 신상진 심대평 심재철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박상돈 박성범 박종근 박찬숙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영식 오영식 오영식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병렬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신명신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경재 이경재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균현 이성권 이영호 이영호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윤성 이인제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원영 이인영 이진구 이진구 장경수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윤성 이인제 이진구 장영달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영 이인영 이인영 이인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향숙 정성호 정장선 정형근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성호 정장선 정형근 정화원
 정갑윤 정두연 정봉주 정성화 정장선 정형근 정화원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형근 정화원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조성태 조성태 최규성 최연희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지병문 최구식 최성 천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최구식 최성 천표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성 천표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천표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상경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희정 나경원 김희정 나경원
 노용래 노현송 김희정 나경원
 문석호 문희석 김희정 나경원
 박기춘 박병석 김희정 나경원
 박종근 박찬숙 김희정 나경원
 배일도 서갑원 김희정 나경원
 서재관 서병렬 김희정 나경원
 신국환 신기남 김희정 나경원
 심대평 심재엽 김희정 나경원
 안민석 안상수 김희정 나경원
 양승조 엄호성 김희정 나경원
 우원식 우제창 김희정 나경원
 유기준 유인태 김희정 나경원
 유필우 윤두환 김희정 나경원
 이경숙 이경재 김희정 나경원
 이광철 이균현 김희정 나경원
 이명규 이상경 김희정 나경원
 이영순 이영호 김희정 나경원
 이원영 이윤성 김희정 나경원
 이인영 이인제 김희정 나경원
 이주영 이진구 김희정 나경원
 임종인 장경수 김희정 나경원
 장복심 장영달 김희정 나경원
 전재희 정갑윤 김희정 나경원
 정성호 정세균 김희정 나경원
 정장선 정진석 김희정 나경원
 정형근 조성태 김희정 나경원
 조배숙 조성태 김희정 나경원
 지병문 진영 김희정 나경원
 최규성 최규식 김희정 나경원
 최연희 한명숙 김희정 나경원
 현애자 홍문표 김희정 나경원
 황우여 황진하 김희정 나경원

기권 의원(1인)

변재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김태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나경원	김학송	김형주	김희정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노현송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문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박기춘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박승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심대평	박형준	박종근	박진	박찬숙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변재일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서재관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신국환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심대평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안민석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양승조	엄호성	안택수	안홍준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상경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기권 의원(1인)

이강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5인)

김명주	김석준	박형준	이진구
최경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정갑윤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장경수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주성영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봉주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채수찬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명숙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규성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기권 의원(2인)

원혜영 차명진

(김덕규 의원 착오로 김원기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찬성 의원 177인, 기권 의원 2인 임)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안양승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목희	이상경	이성권	이시종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주성영
홍준표	황우여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나경원	남경필	김노웅	김노현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진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이명규	이목희	이용희	이성권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원복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이원영	이윤성	이재웅	이인기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옹	이재창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주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이상경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제종길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이인제	이재옹	이재창	이주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진구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황우여				조배숙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	-----	-----	-----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희미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성
 최규식 최병국 최희 천성
 최인기 한선교 허천선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권영세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갑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충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희미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유승민 유필우 원혜영 원희룡
 유정복 유정복 유정복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인제 이인영 이인제
 이진구 이진구 장영달 장경수
 장성호 정성호 정진석 정화원
 정영달 정진석 정화원 정진영
 정성호 정의용 정청래 정희영
 정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성
 최규식 최병국 최희 천성
 최인기 허천선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정진섭 한선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문 표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인 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업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인 기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김영선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항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최규식 홍창선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항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인기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김종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우재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우상호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유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준인 이미경 이상경 이성권 이시종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임종인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임종인 임채정 장복심 장영달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장향숙 전재희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수희 정성호 정진석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정진석 정희수 정희수 차명진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원 주승용 진수희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선 홍창선 채수찬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정화원

박계동 박상돈 박성범 박기춘
 박상돈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양승조 엄호성 우상호
 원희룡 유선호 유필우
 윤두환 이경숙 이광철
 이명규 이목희 이성권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진구 이한구 장영달
 장복심 장영달 정동채
 정성호 정장선 정진석
 제종길 장향숙 전재희
 정의용 정의화 정희수
 제종길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홍문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태년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김중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성구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진구	이한구	임종인	임채정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동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2인)

강재섭 안상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반대 의원(2인)

김영선 이영호

기권 의원(3인)

문병호 정갑윤 정성호

○건강검진기본법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1인)

최인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옥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채정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1인)

엄호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익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중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익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민석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재건,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한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인기,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애자,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최구식, 지병문, 진영, 차명진, 최구식
기권 의원(2인)
 안홍준, 유인태,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재건,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인제,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한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인기,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애자,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최구식, 지병문, 진영, 차명진, 최구식
기권 의원(2인)
 안홍준, 유인태,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장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8인)

장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원희룡	유기준	유선희	유인태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유선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경숙	이군현	이계경	이계진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광철	이상경	이낙연	이명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목희	이시종	이상배	이성구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성권	이윤성	이영호	이원복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원영	이인제	이은영	이인기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이인영	이진구	이재웅	이재창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임채정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허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춘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기권 의원(1인)

이강두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현미 양승조

김정권	김충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배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영호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은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임종인	이진구	임종인	임채정
장향숙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성호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장선	정희수	정장선	정진석
정희수	지병문	지병문	제종길
지병문	채수찬	채수찬	진수희
채수찬	최병국	최병국	최구식
최병국	허천	허천	최성
허천	황우여	황우여	허태열
황우여			

(이상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없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종 인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문 희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문 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희 룡	유 선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주 영	이 진 구	임 종 인	장 경 수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장 복 심	장 향 숙	진 재 회	정 갑 윤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주 성 영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제 종 길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진 영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최 연 희	한 선 교	허 천	홍 준 표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홍 창 선	황 우 여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준 표
기권 의원(2인)				홍 창 선	황 우 여		
김 충 환	임 채 정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혜 숙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기 갑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권 경 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승환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박진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승환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원혜영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윤성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장선 정진영 정청래
 정성호 정진석 정성영 주승용
 정장선 정진석 주성영 주일병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권경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강기갑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갑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강기갑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고성진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고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종인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현미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현미	김형주	김홍엽	김희정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승환	박기춘	박세환	박승환	박진수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렬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재건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계진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최병국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홍창선	황우여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환경보건법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기 갑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고 공 성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나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점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회 룡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임 해 규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고 공 성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나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점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회 룡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주 영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영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우 여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선호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열	최연희	한명숙	허천
황우여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1인)

한선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필우	윤두환	윤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광철	이경숙
이광철	이군현	이목희	이군현
이목희	이미경	이상배	이미경
이상배	이성구	이영호	이성구
이영호	이용희	이윤성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재웅	이은영
이재웅	이재창	이한구	이재창
이한구	임종석	임해규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정갑윤	장경수
정갑윤	정동채	정의용	정동채
정의용	정의화	정진섭	정의화
정진섭	정청래	조정식	정청래
조정식	주성영	조정식	주성영
진수희	진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최구식	최정진	최정진
최성열	최연희	최정진	최정진
황우여	홍미영	홍창선	홍창선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를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김성조	심재철	이목희	정진섭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구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군현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용	이재창	이주영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재성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충환 박계동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정화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숙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숙 배기선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세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임채정 임해규 임종석 임종인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상배

신국환 신기남 신명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성배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임채정 임해규 임종석 임종인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정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운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권철현 노웅래 문희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미경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시종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원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이인제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이상배 진수희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따라一般會計가承繼

한財産의處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정권
 김재윤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원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김재윤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입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기권 의원(1인)

김충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윤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상기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진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윤호중	이강두	이광래	이경숙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응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종근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首都圈整備計画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응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박진 이영순 차명진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성 조 박 병 석 심 재 엽 안 상 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상 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정 식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채일병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최구식 최규성 최성 최연희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채수찬 채일병 최성 최연희 한명숙 최규식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최규식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철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연 희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안 상 수	정 세 균	채 수 찬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릭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최 성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연 희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김부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4인, 기권 의원 없음)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석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석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허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석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광철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목희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성권
 이미경 이상민 이영순 이영호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원복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한구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연희 한명숙 허천 홍미영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노웅래

기권 의원(1인)

김충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대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나경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릉 안 명 옥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제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차 명 진 채 일 병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한 명 숙
 허 천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종 인

기권 의원(4인)

김 낙 성 김 애 실 유 재 건 이 인 영
 (안홍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0인, 기권 의원 4인임)

김 영 대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홍 업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박 계 동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릉 안 명 옥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제 이 은 영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장 경 수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전 재 희
 장 영 달 장 향 숙 장 영 달 장 향 숙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종 복 정 진 석
 제 종 길 주 성 영 정 화 원 제 종 길
 진 수 희 차 명 진 지 병 문 진 수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구 식 최 구 식
 최 연 희 한 명 숙 최 구 식 최 규 성
 허 천 홍 미 영 홍 준 표 홍 미 영
 황 우 여 황 진 하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낙 성 선 병 렬 최 연 희

○출석 의원(26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회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대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회 선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릉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홍 업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릉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영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장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출장 의원(1인)

박 영 선

○청가 의원(11인)

김 학 원 류 근 찬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열 이 석 현 임 태 회 정 몽 준
 조 경 태 최 철 국 한 병 도

○출석 국무위원

부 총 리 겸 권 오 규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정 성 진
 법 무 부 장 관 김 장 수
 국 방 부 장 관 박 명 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김 종 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임 상 규
 농 림 부 장 관 김 영 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김 변 재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규 용
 환 경 부 장 관 이 장 하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장 무 진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 무 현

○출석 정부위원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차 관 서 남 수
 노 동 부 차 관 노 민 기
 건 설 교 통 부 차 관 이 춘 회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김 태 량
 입 법 차 장 도 재 문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	문석호	대통합 민주신당	2008. 2. 13
국무총리후보자(한승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정세균	대통합 민주신당	2008. 2. 14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차한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기춘	한나라당	2008. 2. 19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서해안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	김중률 김홍업 문병호 문석호 서혜석 양승조 이낙연 이영호 제종길	대통합 민주신당	2008. 2. 11
	홍문표 김영덕 김재원 김학원 김충환 안홍준 이계진 이주영 이진구	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비교섭단체	
국무총리 후보자 (한승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정세균 송영길 김영주 민병두 서갑원 정장선	대통합 민주신당	2008. 2. 11
	서병수 공성진 김기현 박세환 박승환 이군현	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비교섭단체	
대법관(차한성) 임명동의에 관한인사청문 특별	김동철 김중률 문병호 선병렬 이상민 최재천	대통합 민주신당	2008. 2. 15
	김기춘 주성영 김명주 김재경 이주영 장운석	한나라당	
	임종인	비교섭단체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서해안유류오염 사고대책특별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2008. 2. 11
	홍문표	한나라당	
국무총리후보자 (한승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2008. 2. 14
	서병수	한나라당	
대법관(차한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이상민	통합민주당	2008. 2. 19
	이주영	한나라당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 위원	보임 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무총리후보자 (한승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손봉숙	김낙성	비교섭단체 (민주당)	2008. 2. 13
	김학원	허천	한나라당	

○교섭단체 구성

통합민주당

(2008. 2. 18)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월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2008. 2. 18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통합민주당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김교홍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영대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명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인재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성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이상 141인)
 (2008. 2. 18)

○교섭단체 해체

대통합민주신당
 (2008. 2. 18)

○국회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유재건	무소속	자유선진당	2008. 2. 4
곽성문			
박상돈			
조순형	무소속	자유선진당	2008. 2. 11
권선택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2008. 2. 12
김낙성			
류근찬			
심대평			

○의안 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4 최성·노웅래·우윤근·신중식·정성호·노영민·신국환·신명·우제창·전병헌 의원 발의)

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4 최성·노웅래·우윤근·신중식·정성호·노영민·노현송·신명·우제창·전병헌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4 정부 제출)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8. 2. 4 원혜영·신기남·정문헌·김재윤·김낙순·강창일·이목희·송영길·이낙연·이상열·김성곤·노현송·유정복·김우남·

서갑원·김홍업·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성 의원 대표발의)

(2008. 2. 4 최성·김현미·신중식·김재윤·김희선·이원영·노현송·신명·노웅래·우윤근·정성호·노영민·우제창·전병헌 의원 발의)

2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발의)

(2008. 2. 4 최용규 의원 외 24인 발의)

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4 정부 제출)

2월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4 정부 제출)

2월 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8. 2. 5 안명옥·배일도·정화원·김석준·고진화·김충환·이윤성·주승용·김무성·진영 의원 발의)

2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8. 2. 5 우제창·노영민·노웅래·변재일·배기선·신명·우제항·전병헌·정장선·최성·한광원 의원 발의)

2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후보자(한승수) 인사청문요청안

(2008. 2. 5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5일 국무총리후보자(한승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8. 2. 11 이한구·임인배·김태환·주성영·김재원·박근혜·이인기·주호영·강재섭·최경환·김성조·정희수·유승민·박종근 의원 발의)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8. 2. 11 이한구·임인배·김태환·주성영·정형근·김재원·이인기·권경석·주호

영·강재섭·최경환·최구식·정희수·이종구·김성조·이혜훈·박종근 의원 발의)

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작은도서관 지원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8. 2. 11 노웅래·우제창·유선호·강창일·정병국·김재윤·한광원·박찬석·강혜숙·신명·김덕규·장복심 의원 발의)

2월 1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8. 2. 13 장향숙·김부겸·유시민·한명숙·노영민·노웅래·백원우·이미경·우윤근·김춘진 의원 발의)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법관(차한성) 임명동의안

(2008. 2. 13 대통령 제출)

2월 14일 대법관(차한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14 정부 제출)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14 정부 제출)

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외국법자문사법안

(2008. 2. 14 정부 제출)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유승삼) 선출안

(2008. 2. 15 의장 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2008. 2. 14 강재섭·유승민·안택수·김성조·이한구·김석준·박근혜·정희수·이병석·박찬숙·박종근·서상기·주성영·김태환·김광원·이명규·이해봉·주호영·최경환·장윤석·정종복·권오을·이상득·신국환·이재웅·이인기·정병국·임인배·최구식·이상배·김재원 의원 발의)

2월 15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8. 2. 15 임종인·강기갑·권영길·김동

철·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상민·이영순·정청래·제종길·천영세·최순영·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

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2008. 2. 15 손봉숙·김정권·박상돈·김영춘·심재철·윤호중·이계진·이광철·이미경·천영세·최인기 의원 발의)

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2. 18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8. 2. 18 교육위원장 제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8. 2. 1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교육진흥법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8. 2. 1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8. 2. 18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교육위원장 제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2008. 2. 19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8. 2. 19 행정자치위원회 제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2008. 2. 19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보건법안(대안)**

(이상 3건 2008. 2. 19 환경노동위원회 제출)

휴회의 건

(2008. 2. 19 의장 제의)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6일간)

○의안 심사**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7. 7. 6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태 의원 대표발의)

(2007. 11. 16 박희태 · 김기춘 · 김학송 · 홍문표 · 이규택 · 이강두 · 김양수 · 정희수 · 김영덕 · 김정권 · 최경환 · 정갑윤 · 김성조 · 안홍준 · 김태환 · 정병국 · 정문헌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9 정부 제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5 정부 제출)

公益法人의設立 · 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住宅賃貸借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07. 7. 6 정부 제출)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5. 8. 19 임인배 · 공성진 · 광성문 · 김무성 · 김석준 · 김성조 · 김애실 · 김태환 · 김희정 · 박계동 · 박세환 · 박재완 · 엄호성 · 유기준 · 이시중 · 이재오 · 이주호 · 이해봉 · 김영숙 · 최인기 · 황진하 · 심재철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5. 8. 24 김원웅 · 염동연 · 신기남 · 정봉주 · 오제세 · 정성호 · 조성래 · 김태홍 · 유승희 · 김영춘 · 정청래 · 김희선 · 김태년 · 전병헌 · 이계진 · 배일도 · 정병국 · 이광철 · 황우여 · 장복심 · 신국환 · 제종길 · 이상경 · 노현송 · 류근찬 · 이원영 · 홍미영 · 이근식 · 유필우 · 안병엽 · 안상수 · 심재덕 · 강기갑 · 고진화 · 최경환 · 이진구 의원 발의)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이혜훈 · 심상정 · 노회찬 · 권영길 · 조승수 · 엄호성 · 최경환 · 안경률 · 김정훈 · 안상수 · 이주호 · 김충환 · 주호영 · 유승민 의원 발의)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05. 8. 30 신기남 · 고진화 · 구논희 · 김부겸 · 김성곤 · 김재경 · 김희선 · 노현송 · 박상돈 · 송영길 · 신국환 · 신중식 · 심재철 · 안민석 · 안병엽 · 안상수 · 양형일 · 오제세 · 우제창 · 유선호 · 이근식 · 이미경 · 이시중 · 이재오 · 이종걸 · 전병헌 · 정문헌 · 정봉주 · 정성호 · 정청래 · 주호영 · 최인기 · 최재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27 유선호 · 원혜영 · 최인기 · 노현송 · 노용래 · 정성호 · 김원웅 · 장복심 · 장항숙 · 박계동 · 현애자 · 최성 · 노영민 · 주승용 · 강창일 · 오영식 · 천영세 · 유기홍 · 이철우 · 류근찬 · 김태홍 · 이근현 · 이원영 · 임종석 · 고진화 · 강기정 · 최순영 · 이영순 · 양형일 · 단병호 · 노회찬 · 심상정 · 권영길 · 강기갑 · 유승희 · 백원우 · 박기춘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8. 13 정성호 · 이기우 · 박기춘 · 이해봉 · 최재성 · 김형주 · 유기준 · 강창일 · 박세환 · 박재완 · 오제세 · 김혁규 · 이은영 · 이원영 · 노현송 · 백원우 · 배일도 · 염동연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발의)

(2004. 12. 10 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5. 3. 2 김애실 · 김현미 · 김희정 · 박세환 · 박순자 · 손봉숙 · 이경숙 · 유승희 · 이계경 · 이계안 · 이재오 · 조배숙 · 진수희 · 최순영 · 홍미영 의원 발의)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5. 8. 31 김효석 · 박계동 · 박찬숙 · 신국환 · 신중식 · 서재관 · 서혜석 · 최인기 · 안병엽 · 이시중 · 이정일 · 이윤성 · 이혜훈 · 엄호성 · 오제세 · 정성호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6. 5. 23 박찬숙 · 정형근 · 박상돈 · 박재완 · 유기준 · 노현송 · 김재원 · 안상수 · 윤건영 · 황우여 의원 발의)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6. 9. 22 신학용 · 신상진 · 이영호 · 정동채 · 김낙순 · 홍창선 · 이광철 · 선병렬 · 정봉주 · 최재천 · 이원영 · 정성호 · 장경수 · 김교홍 · 정의용 · 윤원호 · 지병문 · 이화영 · 김재홍 · 우제창 · 제종길 의원 발의)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3. 17 엄호성 · 김재원 · 정병국 · 허태열 · 진수희 · 이방호 · 안경률 · 박재완 · 심재엽 · 김기춘 · 유정복 의원 발의)

手票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 오제세 · 박명광 · 강창일 · 노현송 · 황우여 · 박기춘 · 박재완 · 박상돈 · 안상수 · 김종률 · 김동철 · 강기정 · 이근식 · 심재덕 · 정성호 · 우제창 · 이계안 · 이미경 의원 발의)

法院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이성권 · 박형준 · 정화원 · 안홍준 · 김양수 · 이계경 · 남경필 · 배일도 · 이재웅 · 김무성 · 김석준 의원 발의)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6. 4. 18 이은영 · 오제세 · 이계경 · 송영길 · 조일현 · 우원식 · 장영달 · 노영민 · 민병두 · 문학진 의원 발의)

(이상 15건 폐기하기로 의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07. 6. 28 정부 제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이종걸 · 윤호중 · 최성 · 박상돈 · 변재일 · 이해봉 · 이영호 · 이상민 · 김종률 · 이인기 · 서재관 · 황우여 · 안상수 · 오제세 · 이근식 · 김태년 · 심재덕 · 김영춘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12. 27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법제사법위원회 보고

官用物品에대한滯納租稅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007. 10. 16 정부 제출)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 정부 제출)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7. 7. 6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2007. 11. 1 임태희 · 우제창 · 이강두 · 김정훈 · 최경환 · 박재완 · 정두언 · 주호영 · 홍문표 · 정세균 의원 발의)

租稅犯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2007. 9. 7 문석호 · 송영길 · 박영선 · 장영달 · 이기우 · 이계안 · 강봉균 · 우제창 · 양승조 · 최용규 · 심재덕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6. 12 박영선 · 김영주 · 김춘진 · 민병두 · 우윤근 · 이계안 · 이미경 · 이영호 · 정의용 · 최재천 · 김명자 의원 발의)

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영세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

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1. 2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재경 · 김정훈 · 박형준 · 이계경 · 이명규 · 이재웅 · 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3. 221 우상호 · 이미경 · 윤원호 · 송영길 · 이광철 · 이인영 · 김영주 · 정청래 · 강혜숙 · 김희선 · 진병현 · 박찬석 · 윤호중 · 김재윤 · 최재성 · 백원우 · 임종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4. 3 이명규 · 김명주 · 김재원 · 맹형규 · 신상진 · 안명옥 · 안상수 · 이성권 · 이재웅 · 이재창 · 정갑윤 · 한선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7. 4. 19 김재원 · 고조흥 · 김성조 · 김우남 · 김정권 · 김학원 · 류근찬 · 박형준 · 배일도 · 신상진 · 유정복 · 이규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2007. 8. 13 김영덕 · 신중식 · 한광원 · 김낙성 · 우윤근 · 김우남 · 이강두 · 홍문표 · 이상배 · 김양수 · 김병호 · 류근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7. 8. 14 김교홍 · 박상돈 · 안상수 · 홍미영 · 정성호 · 민병두 · 심재덕 · 서혜석 · 정봉주 · 이광철 · 신학용 · 한광원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07. 8. 16 홍문표 · 신중식 · 김낙성 · 이시종 · 이인기 · 고희선 · 박상돈 · 정병국 · 주승용 · 김명주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박영선 · 정청래 · 천정배 · 김태홍 · 이목희 · 김종인 · 이계안 · 이미경 · 최재성 · 김현미 · 우윤근 · 장복심 · 최재천 · 김영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6. 9. 22 신학용 · 신상진 · 이영호 · 정동채 · 김낙순 · 홍창선 · 이광철 · 선병렬 · 정봉주 · 최재천 · 이원영 · 정성호 · 장경수 · 김교홍 · 정의용 · 윤원호 · 지병문 · 이화영 · 김재홍 · 우제창 · 제종길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이상민 · 선병렬 · 강혜숙 · 조경태 · 강창일 · 이광철 · 강기정 · 유승희 · 이경숙 · 정청래 · 김재윤 · 임종인 · 김선미 · 한병도 · 지병문 · 장향숙 · 윤원호 · 문학진 · 이종걸 · 김희선 · 김영주 · 유선호 · 김태홍 · 정봉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2007. 9. 28 정부 제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2007. 6. 8 정부 제출)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3 이성구 · 김정권 · 김학송 · 김재원 · 신상진 · 엄호성 · 이계경 · 김송자 · 안택수 · 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6. 5 정성호 · 정장선 · 고조흥 · 최재성 ·

정병국 · 최용규 · 안민석 · 이기우 · 정진섭 · 이계진 · 문희상 · 강창일 · 박상돈 · 박기춘 · 문병호 · 김재윤 · 문학진 · 강성중 의원 발의)

지진재해대책법안

(2007. 1.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6. 9. 27 허태열 · 김종률 · 김무성 · 정진석 · 이해봉 · 김정훈 · 안택수 · 박상돈 · 신상진 · 엄호성 · 이인기 · 황우여 · 김학원 · 안상수 · 박재완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7. 3. 16 최연희 · 최병국 · 김석준 · 김무성 · 배기선 · 김정권 · 심재철 · 김우남 · 최인기 · 맹형규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6. 5. 10 최구식 · 김정권 · 이인기 · 김효석 · 전여옥 · 유기준 · 윤건영 · 정문헌 · 박재완 · 박찬숙 · 박상돈 · 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 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 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6. 12 정부 제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7. 4. 9 민병두 · 선병렬 · 정봉주 · 노현송 · 노웅래 · 이경숙 · 이목희 · 이은영 · 최재성 · 김태년 · 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7. 6. 11 김교홍 · 정장선 · 강창일 · 신상진 · 민병두 · 정봉주 · 이경숙 · 이은영 · 강길부 · 안민석 · 최재성 · 정의용 · 한병도 · 엄동연 · 장복심 · 우윤근 · 유필우 · 김명자 · 문학진 · 이원영 · 김부겸 · 박상돈 · 이기우 · 유기홍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4. 4 이경숙 · 이은영 · 김영주 · 최순영 · 김효석 · 안민석 · 최규성 · 정봉주 · 이미경 · 민병두 · 유기홍 · 이인영 · 홍미영 · 김현미 · 김교홍 · 이상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0 조배숙 · 구논희 · 박상돈 · 안영근 · 유기홍 · 유필우 · 이인영 · 이광철 · 정봉주 · 정장선 · 지병문 · 정성호 · 최재성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5. 3. 21 이주호 · 고경화 · 공성진 · 김석준 · 김영숙 · 김영춘 · 김재원 · 맹형규 · 박세환 · 박승환 · 박재완 · 서재관 · 신국환 · 신중식 · 안상수 · 엄호성 · 유기준 · 유정복 · 윤건영 · 이강두 · 이계경 · 이윤성 · 이재오 · 이철우 · 이해봉 · 정두언 · 진수희 · 허태열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6. 16 안명옥 · 배일도 · 김영숙 · 김정부 · 이계진 · 박창달 · 장윤석 · 임인배 · 안택수 · 박성범 · 이윤성 · 최구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7. 4. 4 이재웅 · 박찬숙 · 선병렬 · 박형준 · 김병호 · 장윤석 · 김정권 · 정종복 · 이상배 · 이명규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 권철현 · 이성권 · 남경필 · 정화원 · 정병국 · 임해규 · 정종복 · 정문헌 · 박형준 · 김희정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봉 · 임태희 의원 발의)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봉 · 임태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2. 26 정부 제출)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5. 30 이주호 · 공성진 · 김영선 · 김영숙 · 박세환 · 엄호성 · 윤건영 · 이균현 · 이해봉 · 임태희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교육위원장 보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0 정청래 · 윤원호 · 천영세 · 전병현 · 이광재 · 이미경 · 김재홍 · 노웅래 · 임종인 · 강혜숙 · 박명광 · 채수찬 · 노현송 · 김재윤 · 김태홍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손봉숙 · 김재윤 · 박상돈 · 박찬숙 · 유재건 · 이계진 · 이광철 · 이재웅 · 이주호 · 천영세 · 최인기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7. 2. 12 손봉숙 · 강혜숙 · 김태년 · 김효석 · 노현송 · 박상돈 · 신중식 · 우제창 · 유재건 · 정진섭 · 최성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지병문 · 정청래 · 우상호 · 김재윤 · 김영주 · 신학용 · 배기선 · 최규식 · 안민석 · 김교홍 · 김현미 · 김희선 · 서혜석 · 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 10. 2 정부 제출)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9 정부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24 정부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23 정부 제출)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 6. 7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6. 1 강기정 · 김영주 · 정청래 · 이광철 · 박상돈 · 김종률 · 유재건 · 김선미 · 김동철 · 강창일 · 이기우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7. 2. 20 고경화 · 신상진 · 김태년 · 안명옥 · 안상수 · 이해봉 · 정성호 · 정문현 · 이인기 · 장복심 · 박찬숙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4. 11 정화원 · 이재창 · 김기춘 · 안택수 · 이상득 · 주호영 · 황진하 · 이방호 · 송영선 · 김충환 · 한선교 · 김재원 · 정성호 · 정병국 · 박찬숙 · 박세환 · 최병국 · 이상배 · 박재완 · 이해훈 · 김석준 · 박승환 · 김성조 · 윤두환 · 김명주 · 서병수 · 신상진 · 이인기 · 남경필 · 권철현 · 김동철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7. 3. 23 백원우 · 송영길 · 김현미 · 장복심 · 유기홍 · 우상호 · 이광철 · 이화영 · 양승조 · 강기정 · 안민석 · 윤호중 · 김선미 · 장향숙 · 한병도 · 유승희 · 홍미영 · 오영식 · 이기우 · 김영춘 · 이경숙 · 노현송 · 이계경 · 이은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안명옥 · 신상진 · 심재철 · 이해봉 · 나경원 · 이계경 · 김무성 · 배일도 · 김태년 · 공성진 · 유기준 · 이인기 의원 발의)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이성구·권경석·박계동·이상득·엄호성·이병석·진영·김석준·전재희·박종근·홍문표·안택수·박재완·고경화·박성범·김충환·유기준·허천·윤건영·나경원·고조흥·정두언·서상기·공성진·이강두·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31 정부 제출)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김춘진·이영호·이인기·김태년·조성래·권철현·이재웅·황우여·임종인·이해봉·안영근·최재천·배기선·정동채·이용희·김덕규·염동연·장영달·정의용·정형근·한광원·조일현·김희선·윤원호·유필우·박상돈·유선호·강창일·정청래·신중식·김재윤·한병도·이화영·이목희·김중률 의원 발의)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4 정부 제출)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정형근·공성진·유기준·박상돈·안상수·안경률·심재철·신국환·정중복·이재오·김기춘·이상배·정갑윤·안명옥·이성권·임인배 의원 발의)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3. 22 박찬숙·제종길·박상돈·김우남·엄호성·이계경·김명주·이재웅·주성영·박재완 의원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4 현애자·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임종인·김종인·김낙성·강기정·양승조·윤호중·장복심·정청래·박명광·김태홍·고조흥 의원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2006. 2. 21 문희·박찬숙·이주호·유기준·안택수·김재원·조성래·안경률·이해봉·이성구·김효석·김선미·안상수·김애실·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2 신상진·유기준·이해봉·정동채·정의화·황우여·이인기·이성구·고조흥·박계동·심재철 의원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3. 23 정화원·문희·박재완·이주호·심재철·최인기·공성진·유기준·안상수·주호영·이인기·이해봉·엄호성·이강두·최순영·손봉숙·김정훈·안명옥·안병엽·김충환 의원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6. 5. 9 장향숙·이목희·지병문·신중식·노현송·김효석·정성호·김태년·김춘진·오제세·김성곤·조성래·엄호성·강기정·황우여·우제창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6 문병호·엄호성·이인기·최인기·조경태·김성곤·노현송·황우여·이영호·정성호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정형근·이재오·정중복·이상배·김기춘·정갑윤·김정권·김병호·문희·안명옥·이성권·이윤성·김성조·박순자·임인배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5. 18 안명옥·최경환·정화원·진수희·이강두·이주호·박찬숙·정의화·엄호성·윤건영·배일도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06. 9. 21 이석현·김진표·김선미·구논희·우제창·문학진·김낙순·장향숙·백원우·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1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7. 9. 20 이병석·김정권·신상진·박재

완 · 박찬숙 · 윤건영 · 고조홍 · 이인기 · 김성곤 · 고희선 · 권선택 · 최철국 · 김명자 · 이성권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07. 9. 6 김태년 · 김교홍 · 이상열 · 김덕규 · 이병석 · 조정식 · 권선택 · 서갑원 · 김낙순 · 박상돈 ·곽성문 · 손봉숙 · 이광철 · 박찬석 · 배일도 · 변재일 · 김태홍 · 신명 · 이시중 · 한병도 · 이성권 · 박순자 · 노영민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7. 6. 21 맹형규 · 김양수 · 김정권 · 엄호성 · 이정재 · 신상진 · 김명주 · 이성구 · 이명규 · 남경필 · 정종복 · 권영세 · 김재원 · 정두언 · 안명옥 · 김학송 · 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3 최철국 · 주승용 · 노영민 · 곽성문 · 우제항 · 변재일 · 배일도 · 조정식 · 이광재 · 장복심 의원 발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7 정부 제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31 정부 제출)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김교홍 · 김태년 · 김형주 · 우상호 · 김춘진 · 강봉균 · 박찬석 · 최철국 · 우원식 · 박기춘 · 주승용 · 노용래 · 강창일 · 김용갑 · 한광원 · 양승조 · 강기정 · 김종률 · 김낙성 · 안영근 · 김선미 · 이주호 · 변재일 · 이규택 · 김현미 · 선병렬 · 문병호 · 정청래 · 박명광 · 김혁규 · 정봉주 · 김원기 · 이시중 · 조정식 · 이상열 · 김덕규 · 서갑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6. 11 이명규 · 김명주 · 김학송 · 배일도 · 심재철 · 안택수 · 이성구 · 이재웅 · 정의화 · 한선교 의원 발의)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2007. 10. 30 정부 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12 정부 제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9. 27 이성구 · 김정권 · 이인기 · 고조홍 · 박재완 · 심대평 · 공성진 · 박계동 · 김석준 · 김기현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7. 8. 24 안홍준 · 고희선 · 권경석 · 김양수 · 단병호 · 맹형규 · 신명 · 신상진 · 이상배 · 정갑윤 · 조성래 · 최구식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8. 1. 14 우윤근 · 신중식 · 주승용 · 노영민 · 우원식 · 장복심 · 김홍업 · 문병호 · 이종걸 · 천정배 · 박영선 · 최재천 · 최규성 · 정성호 · 강창일 · 이영호 · 김덕규 · 양형일 · 채일병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9 정부 제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 정부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8. 10 정부 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7. 9 정부 제출)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05. 7. 20 이목희 · 우제창 · 채수찬 · 이계안 · 조정식 · 김종률 · 최규성 · 배일도 · 장복심 · 김태홍 · 이시중 · 김혁규 · 심재엽 · 최인기 · 김형주 · 제종길 · 박승환 의원 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2 정부 제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28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07. 6. 11 안홍준 · 권경석 · 김병호 · 김양수 · 남경필 · 맹형규 · 박형준 · 배일도 · 신상진 · 이경재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 발의)

(2007. 10. 11 임인배 · 김정권 · 안상수 · 정갑윤 · 이계경 · 박재완 · 정성호 · 김대환 · 김성조 · 신상진 의원 발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 발의)

(2007. 3. 26 이경재 · 신명 · 김형주 · 신상진 · 김송자 · 신중식 · 정두언 · 박순자 · 김덕규 · 맹형규 · 장복심 · 배일도 · 문희 · 이윤성 · 박찬숙 · 단병호 · 박형준 · 이원복 · 심재엽 · 안홍준 · 조정식 · 김영주 · 정문현 · 김석준 ·곽성문 · 김성조 · 고흥길 · 정진섭 · 이인기 · 안상수 · 김애실 의원 발의)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 발의)

(2007. 6. 12 제종길 · 단병호 · 배일도 · 우원식 · 조성래 · 김교홍 · 민병두 · 천정배 · 김영주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진수희 의원 대표 발의)

(2005. 4. 14 진수희 · 박세환 · 전여옥 · 김원웅 · 김재경 · 박형준 · 김춘진 · 이윤성 · 유정복 · 박찬숙 · 김학송 · 엄호성 · 고경화 · 이인기 · 김명주 · 유승희 · 이경숙 · 정병국 · 이해훈 · 전병헌 · 김애실 · 이화영 · 황우여 · 맹형규 · 권오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2007. 9. 10 박재완 · 신상진 · 이상열 · 안명옥 · 이성구 · 박찬숙 · 박상돈 · 윤건영 · 이인기 · 장복심 · 안상수 · 김명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 발의)

(2007. 9. 7 배일도 · 이경재 · 최철국 · 안명옥 · 신상진 · 김춘진 · 이재오 · 김형주 · 진영 · 이목희 · 박계동 · 서병수 · 한선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6 정부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6. 22 정부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07. 10. 5 안홍준 · 김애실 · 김양수 · 맹형규 · 박상돈 · 엄호성 · 이경재 · 정갑윤 · 정두언 · 최구식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안(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07. 10. 12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배일도 · 심상정 · 우원식 · 이경재 · 이영순 · 최순영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안

(2007. 10. 30 정부 제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06. 9. 12 한선교 · 신상진 · 정두언 · 이명규 · 김정훈 · 진수희 · 김양수 · 박형준 · 이성권 · 최경환 의원 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07. 9. 21 한선교 · 김정권 · 이경재 · 이성권 · 권철현 · 이명규 · 고희선 · 신상진 · 최성 · 정종복 의원 발의)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2004. 6. 18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 발의)

(2005. 5. 25 유정복 · 김애실 · 조경태 · 홍문표 · 고경화 · 배일도 · 박재완 · 박찬숙 · 정병국 · 서혜석 · 김재원 · 이규택 · 안민석 · 유승희 · 김재경 · 이재오 · 공성진 · 이주호 · 정종복 · 이시종 · 고흥길 · 최인기 · 엄호성 · 황우여 · 김충환 · 허천 · 박종근 · 한선교 · 이계경 · 이성권 · 정성호 · 정문현 · 서재관 · 이해봉 · 안상수 · 김석준 · 심재덕 · 제종길 · 최성 · 홍준표 · 진영 · 이재창 · 안경률 · 권오을 · 정두언 · 김재홍 · 유필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29 김애실 · 조성래 · 이성권 · 박세환 · 이은영 · 이계진 · 황우여 · 이인기 · 권철현 · 박찬숙 의원 발의)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5. 4. 14 진수희 · 박세환 · 전여옥 · 김원웅 · 김재경 · 박형준 · 김춘진 · 이윤성 · 유정복 · 박찬숙 · 김학송 · 엄호성 · 고경화 · 이인기 · 김명주 · 유승희 · 이정숙 · 정병국 · 이해훈 · 전병헌 · 김애실 · 이화영 · 황우여 · 맹형규 · 권오을 의원 발의)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4. 8 안명옥 · 박찬숙 · 정화원 · 유기준 · 안홍준 · 한선교 · 정갑윤 · 서병수 · 유정복 · 김정훈 · 김석준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6. 29 신명 · 한명숙 · 최재천 · 이경재 · 이미경 · 홍미영 · 이광철 · 김영주 · 이경숙 · 정청래 · 이화영 · 김형주 · 배일도 · 조배숙 · 제종길 · 김태년 · 장항숙 · 선병렬 · 이은영 · 윤원호 · 윤호중 · 유승희 · 단병호 · 김부겸 · 안홍준 · 조경태 · 이목희 · 박병석 · 강창일 · 배기선 · 김춘진 · 이인영 · 박기춘 · 최순영 · 김동철 · 박명광 · 진수희 · 장복심 · 최철국 · 정동채 · 서갑원 · 양승조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6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2 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정권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심재덕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영호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國土建設團特別會計法廢止에 따라 一般會計가 承繼한 財産의 處分에 關한 法律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김석준 · 이성권 · 정갑윤 · 최병국 · 김재윤 · 광성문 · 이해봉 · 이인기 · 신상진 · 안상수 · 문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이시중 · 변재일 · 주승용 · 노영민 · 김낙성 · 박찬석 · 신중식 · 김종률 · 홍재형 · 이광재 · 서재관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인기 · 이성권 · 한선교 · 신상진 · 김태환 · 김영숙 · 박계동 · 정진섭 · 정갑윤 · 이명규 · 김정권 · 고경화 · 의원 발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7. 6. 8 정장선 · 강길부 · 강창일 · 김부겸 · 김선미 · 문학진 · 유필우 · 이영순 · 이인영 · 주승용 · 한병도 의원 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4. 10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김동철 · 노회찬 · 단병호 · 문석호 · 박상돈 · 심상정 · 임종인 · 정성호 · 조배숙 · 주승용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정부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首都圈整備計劃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06. 12. 14 정부 제출)

(이상 11건 수정하여 의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7. 5. 29 이성구 · 황진하 · 박재완 · 신상진 · 공성진 · 고조홍 · 박계동 · 맹형규 · 송영선 · 엄호성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9 김병호 · 박형준 · 정갑윤 · 이재웅 · 김무성 · 최구식 · 안명옥 · 김정훈 · 이강두 · 임인배 · 문희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 · 강혜숙 · 김동철 · 김성곤 · 박재완 · 선병렬 · 양승조 · 엄호성 · 이근식 · 장복심 · 주승용 · 조경태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7. 5. 17 김석준 · 이성권 · 박성문 · 정갑윤 · 최병국 · 김재원 · 진영 · 안명옥 · 최연희 · 김정훈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28 정부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7. 5. 10 장경수 · 변재일 · 염동연 · 박상돈 · 주승용 · 서갑원 · 강길부 · 강봉균 · 이근식 · 서재관 · 최규식 · 유필우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7. 6. 8 주승용 · 이광철 · 이시종 · 조일현 · 채일병 · 노현송 · 김명자 · 장경수 · 박상돈 · 정장선 · 심재덕 · 유필우 · 강창일 · 이낙연 · 강길부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3 김석준 · 엄호성 · 이명규 · 정갑윤 · 이계경 · 이성구 · 이성권 · 김정권 · 안명옥 · 이정재 의원 발의)

都市開發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정부 제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7. 9. 21 강창일 · 강기정 · 박기춘 · 주승용 · 조성래 · 김우남 · 김재윤 · 양형일 · 유선호 · 김선미 · 임종인 · 임종석 · 이상열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

(2007. 5. 31 조일현 · 이근식 · 양형일 · 노현송 · 김낙순 · 이인기 · 서재관 · 주승용 · 우제창 · 조배숙 · 염동연 · 김선미 · 강봉균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7. 7. 12 주승용 · 조정식 · 이시종 · 유필우 · 김영주 · 장복심 · 김교홍 · 조경태 · 노영민 · 우윤근 · 김성곤 · 홍미영 · 김우남 · 박상돈 · 이광철 · 박찬숙 · 김태년 · 조일현 · 정의화 · 정장선 · 최철국 · 노현송 · 홍문표 · 장경

수 · 이낙연 · 강길부 · 한병도 · 정두언 · 강창일 · 김낙성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정부 제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5. 21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 한병도 · 현애자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5. 17 정성호 · 박상돈 · 천정배 · 문학진 · 선병렬 · 우윤근 · 주승용 · 이종걸 · 강창일 · 송영길 · 이계경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5. 25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정성호 · 홍재형 · 박상돈 · 천정배 · 문학진 · 선병렬 · 우윤근 · 노영민 · 주승용 · 제종길 · 이종걸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7. 9. 4 윤두환 · 정의화 · 안경률 · 김재경 · 이진구 · 차명진 · 진수희 · 허천 · 정희수 · 김석준 · 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1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0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4. 5 안명옥 · 신상진 · 이성권 · 유승민 · 이계경 · 황우여 · 고조홍 · 문희 · 안상수 · 배일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7. 3. 8 고경화 · 고조홍 · 김애실 · 김태년 · 나경원 · 박명광 · 박상돈 · 박재완 · 배일도 · 송영선 · 신상진 · 안명옥 · 안상수 · 엄호성 · 오제세 · 유재건 · 이인기 · 장복심 · 장윤석 · 정병국 · 정화원 · 진수희 · 차명진 · 황우여 의

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7. 5. 2 장향숙 · 이광철 · 유재건 · 유선호 · 우원식 · 양승조 · 홍미영 · 유승희 · 이해봉 · 이미경 · 윤원호 · 박영선 · 이기우 · 이석현 · 이경숙 · 정봉주 · 김영주 · 이목희 · 오제세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07. 7. 13 김양수 · 한선교 · 김정권 · 맹형규 · 고희선 · 김명주 · 정갑윤 · 안홍준 · 이재웅 · 이명규 의원 발의)

2008년 1월 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1월 24일 철회됨

○청원 제출

국보 제146호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 명칭 정정에 관한 청원

(2008. 2. 4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김영준 외 99인으로부터 손봉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2008. 2. 4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129-35 성정대 외 29인으로부터 류근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2007. 12. 4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 박완수로부터 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2008. 2. 14 대통령 제출)

○의뢰서 제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 의뢰

(2008. 2. 11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08. 2. 1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2.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질문서

(2008. 2. 5 권경석 의원 제출)

승례문 화재참사에 관한 질문서

(2008. 2. 13 조순형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2. 11 정부 제출)

재건축시 소형평형의무비율 탄력적용 및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2. 12 정부 제출)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8. 2. 15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통지

중앙당 등록 통지

2008. 2.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자유선진당 중앙당이 등록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중앙당 흡수합당신고 통지

2008. 2. 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국민중심당이 자유선진당에 흡수합당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 통지

2008.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